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53
----------	-------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이병훈 · 김영배 · 김철민
박 정 · 신동근 · 어기구
오영훈 · 유정주 · 이상현
이용우 · 전재수 · 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 관람권 등을 매입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등).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입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u>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입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제55조(과태료) ① ----- ----- ----- -----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운동경

<u>1. · 2.</u> (생략) ② ~ ⑤ (생략)	<u>기 입장권 · 관람권 또는 할인 권 · 교환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자</u> <u>2. · 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